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11 발의연월일: 2024. 10. 2.

발 의 자:서명옥·배준영·강선영

박준태 • 조정훈 • 백종헌

강명구 • 박정하 • 고동진

김상훈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증가추세로 60대 이상의 고령환자가 42.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통계청 65세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.6%가 되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 초고령사회에서 대상포진의 예방은 특히 노령인구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위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.

그러나 대상포진은 법정감염병인 수두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되어 발생한다는 특수한 기전으로 인해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,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백신접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예방될 수 있는 질환을 발병 후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실정임.

이에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함(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). 법률 제 호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대상포진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4조(필수예방접종) ① 특별자	제24조(필수예방접종) ①		
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			
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			
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			
필수예방접종(이하 "필수예방			
접종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			
한다.			
1. ~ 17. (생 략)	1. ~ 17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<u>18. 대상포진</u>		
<u>18.</u> (생 략)	<u>19.</u> (현행 제18호와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